

동물복지 관점에서의 한국 사육곰 구호정책 개선방안*

이정환¹⁾ · 이관규¹⁾ · 이민주¹⁾ · 차진열²⁾

¹⁾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조경학과 · ²⁾ 국립공원관리공단

Improvement Disciplines for Relief Policy of Breeding Bears
at the Perspective of Animal Welfare in the Republic of Korea*

Lee, Jung-Hwan¹⁾ · Lee, Gwan-Gyu¹⁾ · Lee, Min-Ju¹⁾ and Cha, Jin-Yeol²⁾

¹⁾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²⁾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BSTRACT

South Korea had encouraged farmers to breed bear to increase farmer's income since 1981. Currently farmers breed over thousand number of bears, however but the policy measures for breeding bears is expected to conflict the main stream of bear conservation due to South Korea belong to the member of CITES, which categorizes and manages bears under Wild Fauna and Flora Protection Act.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special law containing the win-win relief strategy not only for farmers of breeding bears, but international corresponding policy. So, we have reviewed the domestic status and international trends on breeding bears, and suggest the alternative strategies of the policy such as a bear park, a bear village, use of species recovery center, use of a preservation organization. This policy should be accompanied with more detailed fact analysis, management agency, well equipped welfare facility and financial preparation for proper management of breeding bears against changing international trends on wildlife conservation.

Key Words : *Bear farming, Cites, Bear parks,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planning.*

* 이 논문은 2009년 WSPA의 재정지원 및 녹색연합의 연구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의 일부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의 일부입니다.

First author : Lee, Jung-Hwa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el : +82-33-250-8346, E-mail : faith@kangwon.ac.kr

Corresponding author : Lee, Gwan-Gy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el : +82-33-250-8346, E-mail : gglee@kangwon.ac.kr

Received : 9 September, 2013. **Revised** : 15 October, 2013. **Accepted** : 18 November, 2013.

I. 연구배경

사육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약 500여 마리가 수입되었고(MOE, 2005a; Green Korea, 2006), 현재 약 1,062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MOE, 2012). 곰 사육의 초기 목적은 외국으로의 재수출을 통한 농가수익 증대였으나 일부 곰 사육농가에서의 불법적인 응담채취 행위로 인하여 사육곰 보호 여론이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상공부 고시(1985.7.1.)로 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게 되었다(MOE, 2008). 이후 1993년 7월, 우리나라는 국제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 가입하였고, 모든 곰의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가 금지되어 사육곰의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곰사육 관련 국내정책의 변화에 따라 당초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곰사육 농가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었고(MOE, 2010),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곰을 사육하는 국가로 이미지화 되면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 많은 나라들은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Society for Protection of Animals, WSPA), 아시아동물기금(Animals Asia Foundation, AAF)과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구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동물복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인한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본질의 변화, 개체군과 종의 멸종 등 보전생물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Grumbine, 1994; Gordon & Coppock, 1997; Pullin, 2002)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흑곰 구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흑곰의 구조 운동을 하고 있다. AAF,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 중국 사천성 임업청과 협력하여 곰 사육장의 100여 마리 반달가

슴곰을 구조하고, 사육환경이 열악한 곰 사육장들을 폐쇄하였다(Loeffler *et al.*, 2009; AAF, 2010). 영국은 자유식품인증제(Freedom Food Scheme)에 의해 가축동물의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s, 2007a). CITES 가입국인 캐나다에서는 불곰, 흑곰, 북극곰에 대해 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수렵만을 허용하고 있다(Clark *et al.*, 2008).

우리나라는 2005년 3월에 제정된 「사육곰 관리지침」에 따라 사육곰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 및 유역환경청에서 사육곰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곰 사육에 대한 비정기적 관리실태 조사, 법·제도의 부재, 불법적인 응담 및 쓸개즙 등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으며(MOE, 2005b; 2008), 2009년에는 증식, 전시·관람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곰을 약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응담 및 쓸개즙으로 판매한 바 있다(MOE, 2007; 2009). 그러나 「가축법」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곰사육을 허용하지 않으면 곰사육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약 1,062여 마리의 곰을 일시에 처리하는 방법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87.1%가 응담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곰사육을 반대하고 있으며, 곰 사육농가의 약 80%는 정부가 곰 사육농가에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한다면 곰사육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Green Korea, 2010).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2010. 9 발의)」을 발의하였으며, 사육곰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사육곰 구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여러 대안을 제

시함으로써, 정부, 사육농가, 국제단체 등 이해 당사간 합의점 도출을 지원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II.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곰사육과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곰사육을 허용하였던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재원, 프로그램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유럽연합(EU)의 동물복지 사례(MOE, 2000; 2005a; Green Korea, 2006; 2008; 2010; WSPA, 2000; 2007; ENV, 2006; 2009; Namyi, 2009; AAF, 2010; 2011)을 검토하였다. 특히 동물복지관점에서의 분석을 위해 한국, 미국, 영국, EU, 중국 등 국가별 동물복지에 대한 곰사육 정책, 법, 동물복지기준, 인증제도, 프로그램 운영관리방법, 국제적 여론 등에 관한 문헌자료(Green Korea, 2004; 2006; 2007;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s, 2007a; 2007b; Jo, 2006; AAF, 2007a; 2007b; MAFRA, 2008; AAF, 2010, 2011; Clark and Slocombe, 2011)를 검토·비교하였다.

2. 사육곰 구호 및 정책적 대안 도출

곰에 대한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면서도 정부 입장, 농가입장, 국제적 입장 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복수의 구호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국가의 곰 관련 정책과 WSPA, AAF의 구호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동물복지 공통항목을 도출하고, 한국의 사육곰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사육곰의 동물복지 보장, 생활환경 개선, 제도적 지원, 사회적 기반 측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구호대안을 설정하였다. 곰 사육현황과 구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동물관련 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지침과 법, MOE,

녹색연합의 사육곰 관리에 대한 현황 자료(MOE, 2005a; 2005b; 2006; 2007; 2010; 2012; Jo, 2006; Green Korea, 2008; MAFRA, 2008)를 검토하였다. 곰 사육을 중단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들로 설정하였고, 각 대안은 델파이 조사 및 검토를 거친 후, 이를 토대로 현재의 국내 상황에 적합한 사육곰 구호 및 복지 증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델파이 조사 및 검토

현재의 사육곰 관리가 동물복지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면서 동물복지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델파이 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쳤다.

첫째, 복수의 대안을 전문가 그룹이 검토하여 대안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녹색연합 담당 실무자 3인, WSPA 담당자 2인, 전국사육곰 협회 1인, 환경부 담당관, 사육농가 대표 1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인, 대학교 2인의 전문가 그룹이 대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수정·보완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고 2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가 대안 비교·검토한 내용에 대한 현실적 적용 타당성을 상호 검토하였다. 대안 검토의 주요 인자로는 1. 전제조건 충족성(국가이미지 제고, 곰사육 단계적 폐지, 복합적 효과 기대, 동물복지 증진), 2. 동물권리요건(자유, 보호, 치료, 영역성, 공포심 해소), 3. 생활환경(먹이공급, 먹이경쟁감소, 급수접근성, 편의성 등), 4. 제도적 지원(보호의 무규정, 동물권리규정, 환경개선규정, 기금규정, 가이드라인 등), 5. 사회적 기반(곰을 매개체로 한 커뮤니티 형성, 환경교육 등의 프로그램 연계, 학술적 활동 등과의 연계)로 설정하였다. 관련 문헌연구를 토대로 대안검토 인자를 도출하였으며, '08년 10월 21일, 10월 31일, '09년 3월 6일, 5월 8일, '10년 5월 4일, 5월 18일 총 6차례에 걸쳐 전문가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곰 사육 관련 한국 정부정책 변화

우리나라는 1976년 동물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하여 연구, 관람용, 사양 증식 후 수출, 기타 필요가 인정되는 야생조수의 수입을 허가하였다. 1981년 「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규칙」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재수출을 통한 농가수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개인이 곰을 수입·사육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후 1985년까지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약 500여 마리의 곰을 수입하였다(MOE, 2005; Green Korea, 2006). 그러나 일부 곰 사육농가의 응답 채취 행위로 인한 곰 보호 여론에 따라 상공부고시(1985.7.1)로 곰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Green Korea, 2008). 1993년 7월 우리나라는 CITES에 가입하였고, 모든 곰의 상업적 국제 거래가 금지되었다.

동물복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라 할 수 있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24년생 이상의 곰의 도축 및 응답채취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곰의 도축 연한을 10년 이상으로 낮추면서 사육곰의 응답채취 및 도축이 합법적인 것이 되었다.

타조, 오소리, 뉴트리야, 꿩의 경우 2001년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되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축산물로 사육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MAFRA, 2008). 사육곰의 경우,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사육곰의 해외 수출은 금지되어 있으며, 전시·관람용, 약용 등의 가공품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식용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멸종위기야생동물로 분류되는 993마리(2011년 12월 기준)의 반달가슴곰이 포함되어 있으며(MOE, 2012),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 기본원칙)에 따라 사육곰도 동물보호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육곰은 2005년 3월에 제정된 「사육곰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2005년 2월에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지방환경청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사육곰 관리카드를 개인 농가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사육곰에 대한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사육환경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Green Korea, 2010).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10년 9월 14일 여·야 의원 18명은 공동서명으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다(Green Korea, 2010).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곰 증식을 금지조치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육곰 매입관리계획에 따른 사육곰 운영관리가 주된 골자이다. 특별법 발의와 연계하여 2012년 정부는 사육곰 개체수, 연령성별 등 개체별 정보, 건강상태, 유전자(DNA) 분석 및 사육농가 의견수렴 등을 위한 국내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Table 1. Current status regarding the number of bears in captivity by bear farms (as of 2012).

Category	Less than 10 bears	11~20 bears	21~50bears	51~100bears	Over than 100bears	Total
Number of Farm	40	3	8	3	2	56
Number of bears in captivity	143	44	245	221	409	1,062

Source : MOE, 2012.

2012년 3월 현재 56개의 곰사육 농가에서 약 1,062여 마리의 곰이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MOE, 2012). 이 중, 1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는 40개소로 전체 사육장 수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수는 143마리로 1,062여 마리 사육곰 중 13.5%에 불과하다. 50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는 5개소(8.9%)로 총 630마리(59.3%)를 사육하고 있다(MOE, 2012)(Table 1).

2. 곰사육 정책 사례

1980년 CITES에 가입한 일본은 현재 곰사육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개체 수 조절만을 위한 수렵만을 허용하고 있다. 웅담 및 쓸개의 상업적 이용으로 동물복지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WSPA, AAF 등의 구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곰 개체수의 증가에 따른 민가 피해가 발생하자, 2002년 조수보호법으로 먼허자에 한해 특정기간동안 개체수 조절을 위해 반달가슴곰, 불곰 사냥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사냥할 수 있는 개체 수와 나이를 제한하지 않아, 매년 약 2,000마리의 곰이 사냥되고 있는 상황이다(Mano and Ishii, 2008; Foley *et al.*, 2011).

또한 북해도 노보리베츠 곰목장(のぼりべつクマ牧場), 쇼와신산 곰목장(昭和新山熊牧場) 등 곰농장을 조성하여 입장료 수익 이외에 곰의 식용 및 약용, 가공품 등의 판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Foley *et al.*, 2011). 이에 대해 WSPA는 콘크리트 등 부적합한 시설재료 사용과 부적절한 사료 공급 등의 동물복지문제로 일부 공원에 대해 공원시설 개선 또는 공원 폐쇄를 권고한 바 있으며(WSPA, 2008; Foley *et al.*, 2011),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The 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WAZA)와 협력하여 곰복지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테마파크의 시설개선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1989년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하여 곰 사육 농장을 합법화하고, 허가된 농장에 대해서

사육곰을 관리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11개 지역, 97개 사육장에서 7,000~10,000여 마리의 사육곰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AAF, 2010).

야생동물 거래 모니터링 네트워크(Trade Records Analysis of Flora and Fauna in Commerce, TRAFFIC)에 의하면 2000년~2010년까지 압수된 506개의 웅담즙 제품 중 409건(약 98%)이 중국제품으로 밝혀졌다(Foley *et al.*, 2011). 최근 곰 보호여론으로 NGO와 AAF가 협력하여 국가 단위의 곰 구호활동을 하고 중국 의약계에서는 웅담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하기도 하였다(Green Korea, 2004; Loeffler *et al.*, 2009; AAF, 2010; 2011).

베트남은 2005년 곰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AAF와 WSPA의 지원을 받아 단계적으로 곰사육 정책을 폐지하고, 잔여 곰에 대해 곰 테마파크를 진행 중에 있다(Green Korea, 2007; AAF, 2007a; 2007b; Hanoi, 2008). 공공홍보를 통해 곰고기·웅담 소비감소, 야생곰 밀렵금지, 곰증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8년 베트남 Tam Dao 국립공원 곰구조센터에서는 곰 200마리/12ha로 곰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ENV, 2009).

캄보디아에서는 곰 사냥 및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1997년, Free the Bears Fund라는 비영리 자선단체를 통해 Phnom Tamao 야생동물구조센터에 곰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포획된 곰의 구조와 재활을 돕고 있다. 이 보호지역은 곰의 영역성을 고려하여 21개의 넓은 우리를 갖추고 있으며, 곰 115마리/7ha의 공간에 말레이곰,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고 있다(Namyi, 2009; www.freethebears.org.au)

캐나다는 곰사육을 금하고 있으며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수렵만을 허용하고 있다. 주거지, 산업 개발 등 인간의 영향으로 곰과 곰의 서식처에 피해를 줌으로써 인간과 곰의 거주지에 대한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Clark *et al.*,

2008; Clark and Slocombe, 2011).

유관한 정책으로써, 네덜란드에서는 199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10년 동안의 단계적으로 여우사육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s, 2007a; 2007b). 2004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모피동물사육 금지하는 법안 통과시켰으며, 덴마크, 스웨덴 등

에서는 모피농장의 여우 복지환경 개선 및 사육 금지를 위한 법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Ericssona and Heberlein, 2003;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s, 2007b).

반면, 한국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고 구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MOE, 2006; Seo, 2011).

Table 2. Comparison of the current status of key countries in relation to bear farming.

Nation Category	China		Vietnam		Japan		Canada		South Korea	
	○		○		○		○		○(1993.7.6)	
Member of CITES	I	• Brown bear • Asiatic black bear	I	• Malayan Sun bear	I	• Brown bear	I	• Brown bear	I	• Asiatic black bear • Brown bear • Malayan Sun bear
	II	• Sun bear	II	• Sun bear	II	• Black bear	II	• Black bear • Polar bear	II	• Black bear, • Manchurian brown bear • American black bear • Polar bear
Bear farming allowed	○		× (’05)		× (Allowed hunting)		× (Allowed hunting)		○	
Consid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ar farming is legally conducted. ◦ He extraction of bear bile from a living bear through bear farming is receiving international criticism from an animal welfare persp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the case of the Vietnam project, the country has prohibited bear farming. ◦ Bear farming system is abolished through discuss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WSPA. ◦ A bear rescue center has been established and is currently in 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WSPA and the WAZA argues for the improvement of park facilities or the closing of bear parks due to welfare issues regarding the bear park facilities (issues concerning the facilities and feed). ◦ Theme parks : Nobridge Bear Safari Farm in Hokkaido, Japan (Sale of bear meat for consumption, medicinal use, manufacture of processed goods and coo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quent conflicts of human-bear habitation areas (harm incurred by bears and bear habitats due to human influences such as development of residential and industrial ar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ss of initial purpose for bear farming due to government policy changes ◦ Acknowledged as a country permitting bear farming ◦ Initially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income of rural households, but rather caused financial difficulties for small-sized farms 	

Sources : Green Korea, 2004, 2006; MOE, 2000, 2005a, 2008a, 2008b, 2010, 2012; WSPA, 2005, 2010; ENV, 2006; Hanoi, 2008; Clark *et al.*, 2008; Clark and Slocombe, 2011; Foley *et al.*, 2011.

그러나 동시에 동일종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어 WSPA, AAF 등으로부터 곰 보호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Foley *et al.*, 2011). 또한 야생곰이 아닌 사육곰을 가축으로 볼 것인지 야생동물로써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수입 목적을 상실한 사육곰은 매년 개체수가 증가하였고, 일부 농장의 응답, 쓸개채취로 고통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2010년 사육곰 특별법을 발의하고(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제 9341호), 사육농가와 정부, 동물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호정책을 모색하고 있다(Green Korea, 2006; 2010)(Table 2).

3. 동물복지 동향과 한국 곰사육의 동물복지 현황

AAF, WSPA 등 동물복지를 위한 기금 및 기관의 협력 구호 활동 등을 통해, 과거 곰사육을 추진했던 중국, 베트남 등이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미국 등과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동물복지에 대한 프로그램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복지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Main *et al.*, 2001; de Passillé and Rushen, 2005;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s, 2007b; USA, 2008).

WSPA는 반려동물, 야생동물, 농장동물, 유기견, 재난피해를 입은 동물 등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사회 교육, 관련된 지역 업체로부터 협조 확보, 지역 공무원 교육, 당국과 지역 단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곰 은신처 제공을 위한 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WSPA, 2005; 2010).

AAF는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쓸개즙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곰의 자연서식지 보전·보호활동을 하고 있다(AAF, 2010, 2011). 생계유지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농민들에게 보상 수준의 돈을 지불하며, 곰 농업협상 및 계약으로 곰을 구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재원의 99%가 기부금이다. 이는 물건판매 등에 의해 마련되며 기부금의 약 88%는 반달곰 구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AAF, 2007a).

미국 인도주의협회(American Human Association, AHA)는 2000년 9월부터 영국을 벤치마킹하여 자유사육인증제(Free Farmed Program)를 추진하고 있다(USA, 2008). 생산자 및 가공업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자발적이며, AHA가 정한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Freedom Food Scheme에 의해 가축동물의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s, 2007b). 1994년부터 영국의 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에서 실시하는 농장인증 및 식품라벨링제로서 소, 닭, 돼지, 양 등 가축의 생활개선하고 축종별로 복지기준(welfare standard)을 설정하여 준수 시 인증마크를 부여하였다.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기부금, 인증제 참가자의 부과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Main *et al.*, 2001;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s, 2007b).

EU는 동물에 대한 사육, 수송, 도축단계 및 축종별 동물복지지침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강화하는 추세이다(de Passillé and Rushen, 2005). 또한 2006~2010 EU 액션 플랜에서 동물복지 연구 장려, 표준화, 과학에 근거한 복지 지표 마련, 동물 복지 교육 장려, 산업화가 덜 진척된 국가와의 교류 장려, 동물복지 기준에 근거한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Horgan, 2006).

중국은 흑곰 구호센터를 운영하여 흑곰 구조 운동을 하고 있으며 AAF,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 사천성 임업청과 협력하여 곰 사육장의 100여 마리의 아시아 흑곰을 구조하고, 조건이 열악한 곰 사육장들을 폐쇄하고 있다(AAF, 2011).

한국은 사육곰 관리지침에 따라 면적, 사육사 시설, 교배장 및 운동장 시설 등에 대해 권고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권고기준은 사육농가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MOE, 2007). 또한 증식된 사육곰에 대한 수용력 부족과 사육환경악화 등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46개국 환경단체 회원 270여명이 한국의 곰사육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MOE, 2012).

WSPA, AAF 등은 국제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활동을 지원하며, 특히 사육되는 곰, 학대받는 곰을 구조·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캠페인 활동, 동물복지 교육, 쓸개즙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다(WSPA, 2005; 2010; AAF, 2007).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 자유,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영국 가축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FAWC)의 동물 5대 자유는 동물구호 및 윤리, 복지차원의 국제적 동향을 잘 보여준다(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s, 2007a; FAWC, 1979). 특히 중국은 살아있는 곰에서 쓸개즙을 채취하는 등 동물복지측면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MAFRA(2006)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인간의 간섭 없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람과 동물을 수평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후된 환경에서 사육된 국내 곰은 일부 사육 농가에서 식용 및 약용으로 불법 용도변경, 불법 도축되어

응답 및 쓸개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매개체로 인식되기도 하였다(Green Korea, 2004; Foley *et al.*, 2011). 우리나라 반달가슴곰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로 CITES 부속서 1종에 속한다(CITES, 2010). 멸종위기종인 곰의 사육을 합법화하는 것과 곰의 상업적 이용 허용은 동물윤리차원의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동물의 5대 자유를 충족할 수 있는 동물윤리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사육자의 동물복지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자발적인 사육환경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동물복지 동향의 공통적 맥락은 1) 적합한 먹이와 물 제공,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3) 인간의 간섭으로부터의 고통과 공포,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4) 동물의 생태습성과 신체를 보전할 수 있는 사육환경 조성, 5)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6) 사육자 동물복지 교육, 7) 지속적인 관리유지로 요약할 수 있다 (Table 3).

4. 사육곰 구호 대안 설명과 검토

CITES 등 국가이미지 제고 및 곰사육 단계적 폐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의 개선, 곰구체 재원마련을 위한 경제순환, 바이오뱅크 등의 수단 도입을 전제로 6개의 대안을 마련하였다(Table 4). 동물복지, 생활환경, 제도적 지원, 사회적 기반의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대안별 비교·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의 곰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동물복지 확보 측면에서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환경, 보호받는 환경, 치료의 보장, 영역성의 확보를 고려하여 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가 충분한 규모의 영역을 확보하여야 하고,

Table 3. Comparison review of animal welfare by country.

International trends					Common thread of animal welfare	Welfare Status of breeding bears Korea.
United Kingdom, FAWC Animal welfare principles	EU, Guidelines on livestock farming	USA, Free Farmed Program(AHA) Standards on animal welfare	Japan, General principles on animal protection	Korea, Animal Protect Act, principles on animal prot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cess to food should always be facilita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nimum limit of weaning Provision of colostrum to young animals Restrictions on feed Frequency and amount of time for feeding before butche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imals suffer thirst and hunger, or lack of nutrition that will not 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vision of adequate food and 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llet feed for baryard pigs are provided as food 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the cleaning conditions within farms are unsanitary which causes animals to consume foreign substances when 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eedom from discomf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hibition on the use of gags or rop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Kennel permit and put Mare Act. Maximum transit t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imals should be able to express normal behavior and not experience discomf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eedom from discomf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re are instances where animals bite each other to death during breeding due to confined farming spa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plication of slaughter house facilities and butchering methods that minimize pain Reduction in the number of test lab animals Use of replacement meth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throning Extraction of young animals Use of electric appliances Act of cutting of beaks or tails Waiting time for slaughter house Forced molting Use of antibiotics Use of growth hormones Restriction on butchering meth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use of animals killed or suffered injury or does not app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imals should not be subject to fear or dist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eedom from human interference and pain, fear and dist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rm bears that have been increased in numbers from bears imported before 1985 have been reported with authorities to alter their purpose of use to medicinal purposes to sell their gall bladders and bile. There were cases where the purpose of use of farm bears were illegally altered to consumption use in 2007 to sell them as bear meat dis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cure sufficient farming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cess to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grassland Ammonia levels Amount of time held captive in farm facilities Sleeping conditions of animals Interior lighting Minimum standards for birthing space Minimum farming space per number of animals Maximum density for grazing Space for straw, mats, etc. for mud bat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ile considering symbiosis of humans and animals by considering the behavior appropriately trea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imals should be able to live under normal circumstances by maintaining their natural habit and original physical 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eate a farm environment that can preserve the ecological habit and physical form of the anim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 the case of small farms, numerous bears are simultaneously raised in a space not suitable for bears to live in. There are farms that are installed on the front yard of homes and inside of large makeshift buildings which do not receive sufficient light during the day. High mortality rate of baby bears due to inbreeding which is also an intensifying cause of mongrelization The recommended standards for the voluntary improvement of facilities of bear farms are not recommendations based on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Table 3. Continued.

International trends							
• 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 Castration		• Animals should be free from pain, injury or disease	→	• 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 Foreign body gastroenteritis and intestinal gastroenteritis frequently occur which are caused by old farming environment and food
	• Education on animal welfare for workers relating to the farming industry				→	• Education on animal welfare for farmers	• Regulations regarding farm facilities are not clear and regular inspections on management conditions rarely take place • No separate education on animal welfare
		Distinguish and identify			→	• Continuous management and maintenance	• Bears imported from Japan since 1984 have no supporting records such as country of origin, importer, purchase and import details, birth or descent records.

Sources : Green Korea, 2004; 2006; 2007; de Passillé and Rushen, 2005; Jo, 2006; Horgan, 2006;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s, 2007a; 2007b; MAFRA, 2008; Mano and Ishii, 2008; Foley *et al.*, 2011; Main *et al.*, 2001.

곰의 복지를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시설, 관리 인력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관건은 부지규모와 기술 및 전문성에 있으며 현재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이 없기 때문에 확고한 검증을 바탕으로 진행되거나 시범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도 필요하다. AAF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해의 곰 구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치료활동, 먹이, 수영장, 장난감 관련) 비용만 US 430만 달러(약 48억 원)가 소요되었다(AAF, 2011). 환경부는 2000년 사육곰 보상액으로 1마리 당 평균생산비를 6,695,200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MOE, 2000).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는 곰의 생태적 습성, 사육된 곰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 등을 진단·치료하고 곰을 방사하기 위한 적응훈련 등의 기술적 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술적 노하우 축적을 전제로 하여야 곰의 복지를 보장하면서 환경 친화적 활용이 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곰공원 등의 선례를 통해 문제점, 성공요인 등을 면밀

히 분석한 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곰농장과 사육곰에 대해 증식을 폐지하고 곰의 복지를 보장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지원도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육곰 농장의 관리를 위한 지침만이 존재하고 있다. 사육곰을 자연자원으로 인식 전환하고 곰공원 사업 혹은 관리주체가 야생동물을 적극 보전하고 관리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일종의 생물다양성관리협약 개념의 보상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기반 측면에서 곰을 매개체로 한 커뮤니티 형성, 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계, 학술적 활동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곰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연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의 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동물복지 보장 측면에서 개체수를 한정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한 소수의 곰으로 양도·분양받아 곰 공원을 조성한다면 곰의 복지를 보장하는데 더욱 유리할 수 있다. 대규모로 조성하는

Table 4. Specific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ompared to alternatives.

	Alternative	Advantages	Disadvantages
1	Large bear pa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vantageous in securing the territory of bears from an animal welfare protection perspective. • The prospect for ties in creating communities, educational programs and scientific activities focusing on bears will be possible depending upon the intentions of the park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icult to acquire a site sufficient to accommodate large number of bears • High possibility for the occurrence of problems resulting from exceeding the accommodation capacity of the environment
2	Small bear pa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e to the reduced level of danger and the increased level of management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compared to large bear parks, it will be possible to create an environment advantageous in guaranteeing the welfare of the anim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icult to create an environment excluding human interference that is similar to an environment where wild bears live in
3	Slogans and construction of pa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m the perspective of saving as many bears as possible that are currently raised in farms, that level may be heightened than the current level. • A public animal welfare advertising effect can be looked forward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ue may arise from the perspective of accommodation capacity of the environment • Need for a systematic support to arrange for funds and the execution of funds. • Realistic measures such as the diagnosis, treatment, adaptation training, food supply of rescued farm bears must first be arranged
4	Establishment in univers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 universities have access to experimental forests or on-campus sites and also have curriculums for departments and majors relating to veterinary medicine and animal resources,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the level of animal welfare to a certain extent for farm bears and also use them as a part of animal behavior stu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use for medical testing purposes should only be invited on the condition it is prohibited from an animal welfare perspective • Animal welfare facilities of a certain quality and level should be established which require to undergo discussion among universities, local residents and the government
5	Establishment in endangered species restoration centers and establishment in habit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a bear genetically similar to the domestic Asiatic black bear is introduced to bear farming, it will help reduce the overall costs of import and secure the number of bears necessary for the restoration project. • Technology to resolve issues regarding farm bears and the ecological habit of bears is establish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ground work to introduce other species of bears other than Asiatic black bears such as brown bears and black bears. • The natural grazing grounds are limited to Mt. Jiri area. • There is a lack of facilities and personnel to accept all of the bears • There is a need for a substantial budget or financial support
6	Other preservation institu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is an alternative that may be reviewed if sufficient area is secured and technology, expertise, guidelines and protocols are established •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existing bear farms in other countries, issues and success factors can be analyzed and then implemented in the meas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 there is a limited number of habitats and other preservation institutions to introduce farm bears to, only a few institutions may accept the bears •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investment and a systematic foundation for facility management

방안의 환경수용력 등의 문제점과 충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야생의 곰과 같은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곰 본연의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개체를 대상으로 복지를 보다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대규모 곰공원 방안과 본 방안은 곰의 복지적 관리를 위해서 보호받아야 할 곰과 사람과의 공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으며, 야생 곰과 같이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는 대규모 곰테마파크 조성 대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곰의 생태적 습성, 사육된 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적 문제가 선결 및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이므로 대규모 곰테마파크에 비해 위험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적 지원 측면과 사회적 기반 측면은 대규모 곰공원 조성대안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셋째, 곰 구호운동 및 사회적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공원 조성 방안이 있다. 동물복지보장 측면에서 현재의 사육곰을 최대한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현 사육곰 관리 복지수준보다 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명하나, 구제한 후의 사육곰의 상태 진단, 치료, 사회화 적응치료, 먹이 공급 등의 현실적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생활환경개선 측면은 곰을 구제 후 공원화 한다는 측면에서 앞서 검토한 대규모 곰 공원 조성대안과 소규모로 조성하는 대안과 동일하다. 생활환경개선 측면은 어느 대안을 선택하든지 공통적인 해결 과제에 해당된다.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는 기금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육곰을 구제하여 공원화하는 데 필요한 제반 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하며, 국민신탁기금 등을 통해서 사육곰을 매입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기타 기금조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매입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매입하여 구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 먹이제공 등의 지속적인 소요재원 마련과 기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기반 측면은 앞서 말한 곰공원 방안들과 동일하다.

넷째, 대학에서 유치하는 방안이다. 동물복지,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대안 1, 2, 3에서 검토한 내용과 동일하다. 학술립을 보유한 대학이 환경수용능력 내의 소수의 곰을 수용할 부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사육곰을 의학적인 실험용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동물행태연구의 일환으로 사육곰을 수용한다면 사육곰의 동물복지를 일정 수준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동물복지시설이 갖춰져야 하며 대학과 주민, 정부의 협의체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반달가슴곰 종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종복원센터라 함)에서 유치하는 방안이다. 동물복지보장 측면에서 사육곰 중 국내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반달가슴곰을 종복원센터로 도입한다면 수입에 따른 제반비용을 절감하고 종복원사업에 필요한 개체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사육된 반달가슴곰의 유전적 동일성 검사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곰, 흑곰 등의 다른 개체는 국내에 적합한 종이 아니므로 종복원센터로 도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 종복원센터는 곰의 생태적 습성, 사육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종복원센터의 시설확충 및 인력확보 등의 문제가 선결되고 단계적 도입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해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종복원센터의 곰사육 시설확충 및 인력보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달가슴곰 자연방사 지역이 지리산 권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다 많은 개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도 중복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중복 원사업 대상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자연 방사한 반달가슴곰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중복원센터에서는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교육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방사개체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은 반달가슴곰 피해보상종합보험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사회적 기반 측면에서 방사되지 못한 개체는 증식·홍보·연구용으로 보호관리하고,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홍보를 위한 반달가슴곰 해설프로그램 및 생태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동물복지시설을 충분히 갖춘 서식지 외보전기관으로 유치하는 방안이다. 동물복지,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는 대안 4에서 검토한 내용과 동일하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중 사육곰을 도입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육곰을 모두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충분한 영역확보와 기술 및 전문성,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이 수립된다면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며, 기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시설 확충 및 신규 지정을 통해 소수의 곰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투자와 시설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가, 곰사육 농가, 동물복지단체,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6개 대안을 연계 및 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곰 건강상태나 곰 농장주 혹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의 의견 및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대안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제시된 대안들은 공통적으로 동물복지를 위한 충분한 규모의 부지, 시설 등이 전제되고, 생활환경 개선, 관리인력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기술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 사육곰 구호방안

6가지 대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단일대안 만으로는 사육곰을 구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수의 대안을 병행한 사육곰 구호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구매,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재원과 구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2000년 책정된 사육곰 1마리당 보상액(6,695,200원)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¹⁾을 감안하면, 사육곰 1마리당 약 977만원(6,695,200원×(1+0.032)¹²≒9,771,000원)¹⁾, 즉 1,000마리를 수용하기 위한 금액으로 약 97억 7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육곰 수용 이후 더 많은 재정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이나 기부 형태로 AAF, WSPA 등의 지원이나 자연환경신탁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국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가 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사육곰 수렵장 수익을 사육곰 복지사업에 운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곰농장, NGO, WSPA, AAF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곰 복지기구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사육곰을 포함한 동물 구호활동은 동물관련 협회, 특정 구호 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WSPA, AAF 등의 국제기관과 연계한 국가 단위의 협력 기구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AAF, 2007a; 2007b; MAFRA, 2008). 이는 정부, 사육농가, 동물복지단체,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곰 구호사업 재원 확보, 곰 복지기구 조직을 고려하여 Figure 1과 같이 사육곰 구호방안을 제시하였다. 곰농장주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곰 복지기구는 국가가 제시한 사업유형별로 곰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곰 복지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아 평가하며, 취지에 부합한 사업에 대해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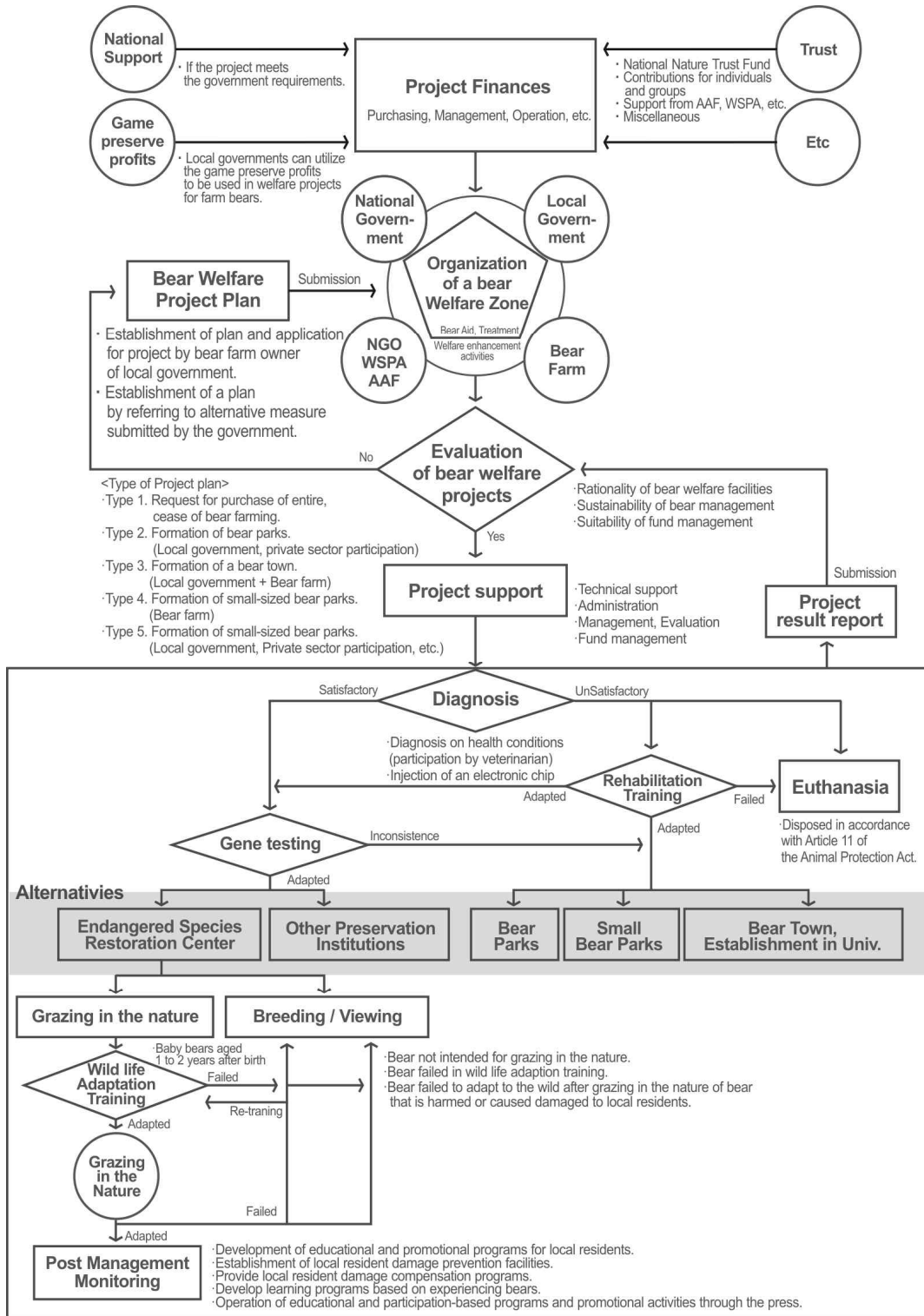


Figure 1. Alternative model on relief system for breeding bears.

행정, 기금운동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가능하다. 국가는 5개 유형의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량수매요청 또는 곰사육 중단, 둘째, 지자체나 민간 유치 곰공원화, 셋째, 지자체와 곰농장 주최의 곰마을 조성, 넷째, 곰농장 자체 소규모 곰공원화, 마지막으로 기타 협력단체와 지자체, 곰농장 협력 소규모 곰공원화이다. 시설의 합리성, 기금운용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 하에 곰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적합하게 평가된 복지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업계획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에는 수의사를 통해 곰의 건강상태를 우선적으로 진단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개체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재활훈련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개체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상태 진단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나 재활훈련에 부적응한 사육곰은 동물보호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사육곰은 종복원센터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종복원센터로 수용된 사육곰은 방사용, 증식·관람·연구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생후 1~2년 된 새끼곰을 대상으로 야생적응훈련을 실시한 뒤 자연방사하고, 야생적응훈련에 실패한 개체는 증식·관람·연구용으로 관리한다. 이때, 방사된 개체가 자연적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지지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주민 및 등산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곰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육곰 복원사업에 대한 국민관심 유발을 위한 언론의 지속적 홍보 전략 수립 등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

유전자 검사에서 부적합 진단을 받은 경우, 재활훈련을 통해 야생 환경에 적응이 된 경우,

종복원센터에 수용되었지만 방사 후 야생에 부적응하거나 주민피해를 입힌 개체 또는 야생적응훈련에서 낙오한 개체의 경우는 곰공원, 곰마을, 대학의 학술림 등에서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동물윤리 및 복지 차원에서 사육곰을 관리할 수 있는 곰 구호 방안을 제시하여 사육곰 정책 변화에 따른 곰 관리 대안 및 사육곰 관리정책 방향을 지원하고자 진행되었다. 문헌분석 및 델파이 조사 등의 방법으로 동물복지 공통요소를 종합하고, 그 결과로부터 곰 공원, 곰 마을 조성, 종복원센터 활용, 서식지외 보전기관 활용 등 6가지 대안을 도출하였다.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관리기관, 관리방법, 자원마련, 지속적 운영 측면을 고려한 곰 구호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육곰 관리에 대해 현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개 대안을 제시하였다. 1) 대규모의 곰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2) 소규모의 곰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3) 곰 구호운동 및 사회적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4) 연구나 홍보차원에서 대학에 유치하는 방안, 5) 반달가슴곰 종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유치하는 방안, 6)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대안별 비교·검토결과, 동물복지의 보장과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종복원센터나 대학,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기술면이나 전문시설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소수 개체만 유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요구되었다. 곰공원 조성방안은 제도적 지원 및 기술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 사육농가, 동물복지단체, 국민 등 다양

1) 통계청(2012)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 7월까지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2%이다.

	Av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7
Increase rate of consumer prices (%)	3.2	4.1	2.8	3.5	3.6	2.8	2.2	2.5	4.7	2.8	3.0	4.0	2.4

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6개 대안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곰 구호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매,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재원이 필요하다. 국가, 수렵장 이익, 기부금이나 동물협회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등으로 곰 수매와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곰농장, NGO, WSPA, AAF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곰복지 기구를 조직하여 곰 복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농장주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제시하는 사업유형에 따라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곰 복지기구로부터 곰복지시설 합리성, 곰관리 지속성, 기금 운용 적합성 등을 평가를 받은 후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구호정책이 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실태조사, 곰 복지기구 설립, 사육곰 복지 증진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개발,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 등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단체와의 공동 대안마련과 협력, 시범사업으로서의 공원사업 실시, 서식지외 보전기관 및 종복원센터를 활용할 경우의 대비, 곰 사육정책 관련 합의과정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서식지외보전기관과 종복원센터의 추가 지정 및 신설, 자연방사 지역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추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호방안들은 확고한 검증을 바탕으로 진행되거나 시범사업을 거

쳐 그 성공여부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육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사육곰 복지 증진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개발 및 우리나라 사육곰 정밀 실태조사, 모니터링, 질병대책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WSPA, AAF 등 국제 단체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 용 문 헌

- Animal Asia Foundation (AAF). 2007a. Performance Review, Financial Summary.
- Animal Asia Foundation (AAF). 2007b. Help Rescue 200 Moon Bears in Vietnam.
- Animal Asia Foundation (AAF). 2010. 20 Chinese provinces now bear-farm free after Animals Asia's dramatic rescue.
- Animal Asia Foundation (AAF). 2011. Information of Bear Farming Industry in China. AAF report, China.
- Clark, D. A. and Slocombe, D. S. 2011. Grizzly Bear conservation in the Foothills Model Forest : appraisal of a collaborative ecosystem management effort. Policy Sci. 44 : 1-11.
- Clark, D. A. · Lee, D. S. · Freeman, M. M. R. and Clark, S. G. 2008. Polar Bear Conservation in Canada : Defining the Policy Problems. 61(4) : 347-360.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 2010. Appendices I, II and III : Valid from

- 14 October 2010.
- De Passillé, A. M. and Rushen, J. 2005.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issues in animal welfare. *Revue Scientifique et Technique de l'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24(2) : 757-766.
- Education for Nature Vietnam (ENV). 2006. Regulation on Management of Captive Bears. Education for Nature Vietnam (ENV). 2009. Bears tortured to meet Asian thirst for bile.
- Ericssona, G. and Heberlein, T. A. 2003. Attitudes of hunters, locals, and the general public in Sweden now that the wolves are back. *Biological Conservation*. 111(2) : 149-159.
- Farm Animal Welfare Council (FAWC). 1979. Farm animal welfare council press statement.
- Foley, K. E. · Stengel, C. J. and Shepherd, C. R. 2011. Pills, Powders, Vials and lakes : the bear bile trade in Asia.
- Gordon, J. and Coppock, J. 1997. Ecosystem Manag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Marian F. Chertow and Daniel C. Esty eds., *Thinking Ecologically : The Next Gener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39-40.
- Green Korea. 2004. Korea bear bile trade survey report.
- Green Korea. 2006. Bear breeding policy in Korea, As it is good?
- Green Korea. 2007. Help Rescue 200 Moon Bears in Vietnam.
- Grumbine, R. E. 1994. What Is Ecosystem Management?, *Conservation Biology*. 8 : 31.
- Hanoi. 2008. Report on the review of Vietnam's wildlife trade policy.
- Horgan, R. 2006. EU animal welfare legislation : current position and future perspectives. In *Proceedings of the Seminar Animal Welfare in Chile and the EU : Shared Experiences and Future Objectives*. European Commission.
- Jo, G. H. *et al.*, 2006. A Model of Animal Welfare Farming in Korea. MAFRA report.
- Korea Labor Committee. 2011. Special legislation for the management of breeding bears (Bill No. 9341).
- Loeffler, I. K. · Robinson, J. and Cochrane, G. 2009. Compromised health and welfare of bears farmed for bile in China. *Animal Welfare*. 18 : 225-235.
- Main, D. C. J. · Webster, A. J. F. and Green, L. E. 2001. Animal welfare assessment in farm assurance schemes. *Acta Agriculturae Scandinavica, Animal Science*. 51(30) : 108-113.
- Mano, T. and Ishii, N. 2008. Bear gall bladder trade issues and a framework for bear management in Japan. *Ursus* 19(2) : 122-129.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2008. A Direction of promoting for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Policy.
- Mistry of Environment (MOE). 2000. Nationwide Survey of breeding bears.
- Mistry of Environment (MOE). 2005a. Breeding bear management guidelines.
- Mistry of Environment (MOE). 2005b. 2005 Domestic breeding bear management positions f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ress release of Division of Natural Resources of MOE.
- Mistry of Environment (MOE). 2006. Comprehensive plan to restore endangered plant and animal growth (2006~2015).
- Mistry of Environment (MOE). 2007. Specify other habitat conserva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 Mistry of Environment (MOE). 2008. Analysis of the first half of 2008 breeding bear management report results.
- Mistry of Environment (MOE). 2010. Bear breeding

- management. Internal meeting materials in MOE.
- Mistry of Environment (MOE). 2012. Promotion Plan Survey for breeding bears management plan. Internal meeting materials in MOE.
- Namyi, H. 2009. Report on Bear Research and Conservation in Cambodia.
-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s. 2007a. Status and research results abroad of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policy.
-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s. 2007b. Certification of Foreign Animal Welfare.
- Pullin, A. S. 2002. Conservation Biolog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o, C. H. 2011. The Study to Challenge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Asiatic Black Bear Eco-Villages in Jiri Mountain.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15(2) : 1-109.
- USA. 2008. Bear Protection Act of 2008.
- World Society for Protection of Animals (WSPA). 2005. Finding Herbal Alternatives to bear bile. WSPA Report.
- World Society for Protection of Animals (WSPA). 2010.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 <http://www.freethebears.org.au>
- <http://www.bearpark.jp>